



[제33호서식]

등부 2024 년 제 1558 호

인 증 서

총 회 의 사 록

1. 일 시 : 2024년 2월 17일 16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 아이타워지하1층
3. 총회원수 : 20명
4. 참석회원수 : 16명



의장인 대표권있는 이사 김*태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 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

제 1 호 의 안 : 정관변경의 건

의장은 당 법인의 정관을 별첨 개정안과 같이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없이 승인가결하다.

제 2 호 의 안 : 이사 해임의 건

의장은 당 법인의 이사 A 에 대하여 정관 제12조 3항을 위반하여 부득이 해임해야할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가부를 물은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자고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전원 이의없이 승인 가결하다.

제 3 호 의 안 : 결산보고의 건

의장은 당 법인의 별첨 수입지출 결산서의 내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구한 바 전원 이의없이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 금일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을 알고 폐회를 선언하다.

(때는 18시 00 분)

위 회의의 경과요령과 결의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아래에 기명 날인하다.

2024년 2월 17일

사단법인 장애인미래에너지창조연합회

의장 이사(대표권 있는 이사) 김 광 태(법인인감)



정관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에너지 생산·재생·재활용 및 절약을 위한 국민 교육·홍보·관리효율화사업 가. 에너지 시설물 관리·용역사업(공사/설비/경호/설계/감리/청소/시설관리/주차장관리 용역사업) 나.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서비스 보급사업 (스마트발전기, 의료보조기구, 장애인 전동휠체어, 여가산업 등)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2. 에너지 산업의 건강한 환경조성 및 에너지 산업종사자 복리 후생 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근거한 복지사업 포함 가. 에너지 관련 업계 보안장비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 나. 취약계층 및 에너지 관련 산업 종사자 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및 의료 지원사업 다. 취약계층(소년소녀가장 포함) 및 장애인 가정을 위한 방충망 보급사업 라. 기타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 충당 사업(구내식당 포함) 5. <신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에너지 생산·재생·재활용 및 절약을 위한 국민 교육·홍보·관리효율화사업 가. 에너지 시설물 관리·용역사업(공사/설비/경호/설계/감리/청소/시설관리/주차장관리 용역사업) 나.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서비스 보급사업 (스마트발전기, 의료보조기구, 장애인 전동휠체어, 여가산업(글램핑, 캠핑장) 등)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2. 에너지 산업의 건강한 환경조성 및 에너지 산업종사자 복리 후생 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근거한 복지사업 포함 가. 에너지 관련 업계 보안장비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 나. 취약계층·산업종사자·기타 일반인을 위한 의료시설 설치·운영사업 및 의료 지원 사업 다. 취약계층(소년소녀가장 포함) 및 장애인 가정을 위한 방충망 보급사업 라. 기타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 충당 사업(구내식당 포함) 5. 에너지산업 확대를 위한 산업종사자 인력 송출사업

현행	개정(안)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법인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월권 행위 또는 직권 남용행위 5. <신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법인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월권 행위 또는 직권 남용행위 5. 기타 법인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 하고 단체를 이용한 부정적 금전적 행위(민형사상 법적인 처벌)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② 총회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문서, SNS, 전자메일, 공고 등의 방법으로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② 총회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문서, SNS, 카카오톡, 전자메일, 법인의 홈페이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자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및 이사회가 결정하여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 자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삭제> 3. 기타 중요한 사항 및 이사회가 결정하여 총회에 부치는 사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신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협회 지회 분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거나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긴급 사항	제2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승인에 관한 사항 5. 협회 지회 분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거나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긴급 사항 9. 취득에 관한 사항
제43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입지출결산서 (2023년)

사단법인 장애인미래에너지창조연합회

(단위: 원)

계 정 과 목	금 액	
I. 매출액		27,000,000
서비스수입 (경호경비)	27,000,000	
II. 매출원가		27,000,000
서비스원가 (외주용역)	27,000,000	
III. 매출총이익 (I - II)		0
IV. 판매비와 관리비		32,458,352
1. 급여(임금)	0	
2. 복리후생비	18,776,342	
3. 여비교통비	291,300	
4. 임차료	2,420,000	
5. 통신비	906,500	
6. 도서인쇄비	1,425,000	
7. 세금과공과	199,900	
8. 차량유지비	1,780,210	
9. 지급수수료	3,691,100	
10. 소모품비	1,548,000	
11. 경조사비	1,420,000	
V. 영업손익(III - IV)		- 32,458,352
VI. 영업외수익		0
VII. 영업외비용		0
VIII. 당기순손익		- 32,458,352

등부 2024년 제 1558 호

인 증

위 사단법인 장애인미래에너지창조연합회—————의
2024년 2월 17일자 총회의사록에 대하여—————
회원 김*태, 동 김*영, 동 배*화, 동 이*은, 동 서*기, 동 배*열, 동
이*현, 동 임*재, 동 현*기, 동 정*준, 동 안*화, 동 김*복, 동 김*
영, 동 김*규, 동 배*선, 동 이*형의 각 대리인 안승철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
하고, 그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
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2024년 3월 22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 시 아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5, 3층(서초동, 중산빌딩)

공증담당변호사

김 동 호

아 래

1. 운전면허증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 확인서
4. 진술서
5. 회원명부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정관